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3-----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3. 3. 13

다. 상정일자 : 제 11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2003. 3. 20)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구용대 세무과장)

가. 제안이유

현행 구세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시행상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지방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세등을 납부했음을 신고 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관련 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민원인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도 납부여부를 알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코자 함 (안 제10조)

3.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일선공무원등이 업무추진상 간소화 가능한 업무를 개발추진중 이와 관련된 규제를 민원인에게 편리하게끔 고치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좋다고 생각됨.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